

1. 공교육 정상화법 연수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제5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호(2019.3.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1 학교 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 훼손,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따돌림, 정보통신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 조)

2 학교 폭력의 이해

가.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침 뱉기, 눈 흘기기,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학교폭력? 빵 셔틀이나 담배 셔틀과 같은 심부름도 학교폭력?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력입니다.

나.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다. 학교 폭력의 발생을 교사, 학부모, 학교, 검찰 등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비로소 가해 학생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신고는 과거의 폭력, 현재의 폭력, 미래의 폭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학부모가 알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피해학생의 징후>

-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운동화, 휴대폰, 태블릿 PC,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 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 이유없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어머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가해학생의 징후>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갑자기 돈 씹씹이가 커졌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후배나 친구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봉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과거 학교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이 많음 ◦ 1회성 단기적 성격을 띤 경우가 많음 ◦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짐 ◦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함
최근 학교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그룹이 따돌림 등 집단으로 행하는 형태로 변화 ◦ 강제적인 심부름(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협박, SNS상에서 집단 따돌림, 놀림 등 정신적 폭력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 ◦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속적·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 저연령화 현상과 더불어 학교 현장 내에서 많이 발생

4 자녀의 학교 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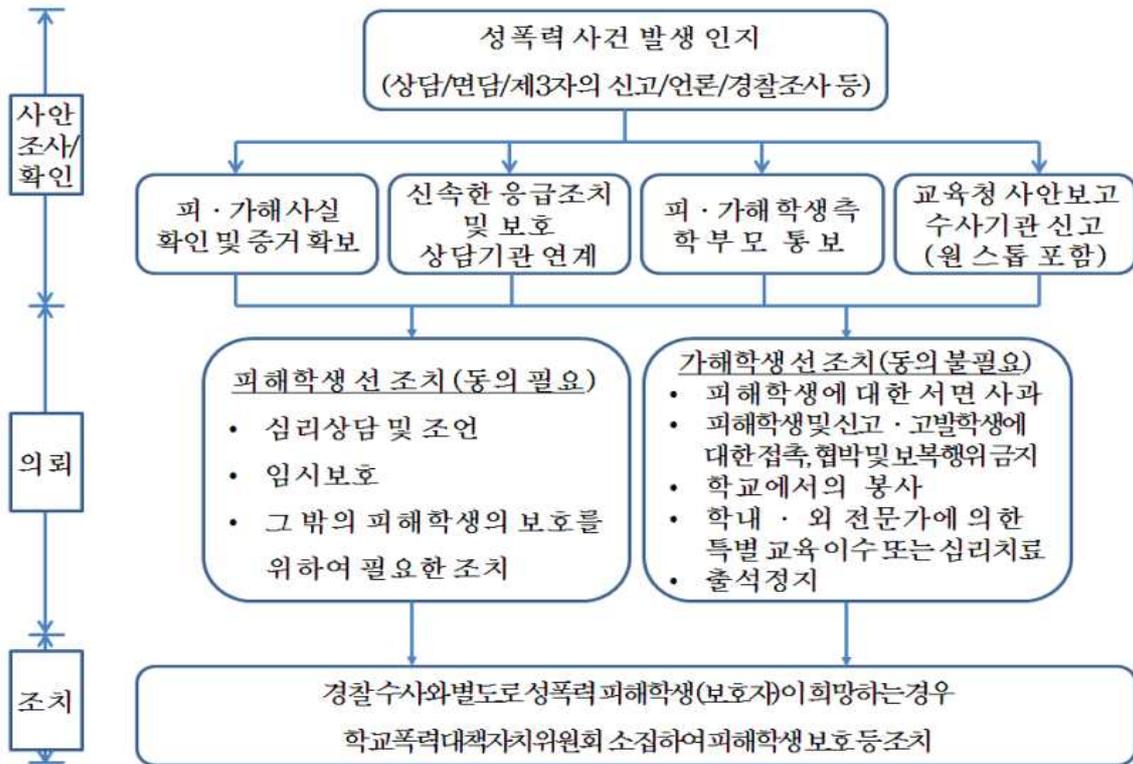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응원해 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며 지지해 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예) 문자메시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보호해 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 듭니다. •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 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하지 마세요.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순 없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5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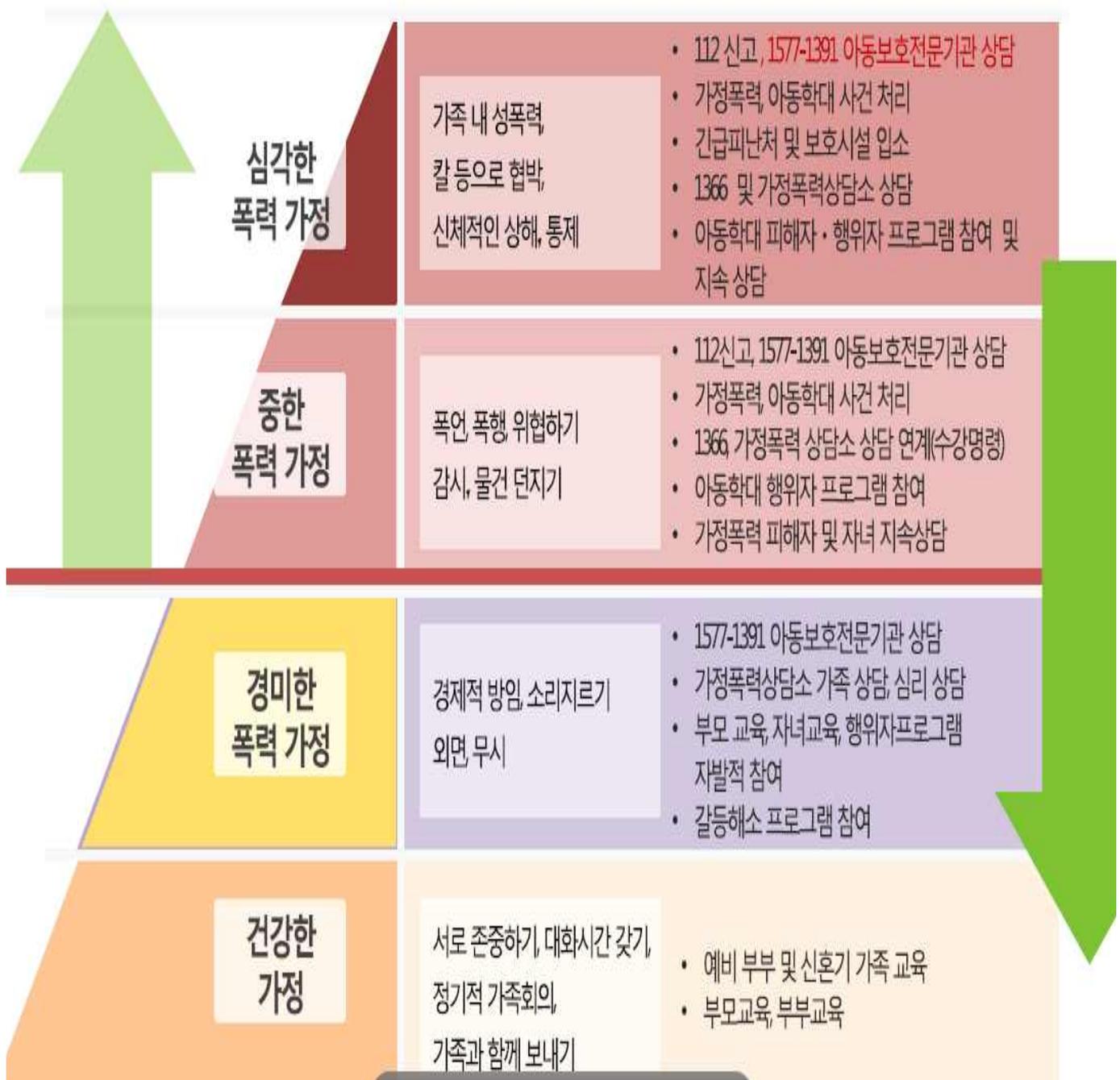


-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
-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시에는 피해자 동의 필요
- 성폭력 피해학생(보호자)이 신변 노출 방지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석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피해학생(보호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3. 가정폭력 예방 및 신고의무자 연수

가정폭력 예방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_신고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참고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_신고 절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의사항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4. 교원지위법 안내 연수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 위의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교원지위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에 담길 예정

3.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행한 사안부터 적용

4.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인권교육 연수

1 아동권리의 이해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라는 개념을 고려한지는 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존재일 뿐 주체적인 위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지내온 아동이 성인처럼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1989년 국제연합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인식되었다.

- 가. 아동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다.
- 나. 아동은 약자를 위한 권리를 누린다.
- 다. 아동은 발달 시기적 특징을 고려한 권리를 갖는다.
- 라. 아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2 아동 권리의 필요성

1. 아동은 그 자체로 독립된 인간 존재로 보는 인식이 미약하기에 개선해야 한다.
2. 아동은 부모의 요구 및 이익과 다른 요구 및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
3. 아동은 필요할 때 국가의 개입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4. 아동은 아동이라는 이유로 권리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5. 아동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서 밝힌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적인 존재다.

3 아동권리협약의 이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0년 9월 2일 협약은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하여 지키고 있다. 2009년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3개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하게 아동권리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4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 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 나. 생존 및 발달의 원칙
- 다. 비차별의 원칙
- 라. 아동 참여의 원칙

6.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연수

청소년기는 친구와의 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 가족 관계 갈등 등의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생명존중과 정신건강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세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 상담 치료가 가능한 기관과 자살 징후에 대해 안내문을 보내 드리오니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살심리

- 충동성이 강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짐
-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망감이 원인
-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도피심리가 강함
- 동반 자살이나 모방 자살이 흔히 일어남

청소년 자살의 징후

언어적 단서	정서·행동적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말하거나 문자메시지, 일기장, 낙서의 암시 • 내가 사려져 줄게 •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 이젠 정말 끝이야 • 아무것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 엄마, 아빠 “미안해”, “안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행동변화, 활동수준의 증가/감소 • 물건을 정돈해서 주변사람에게 나누어 줌 • 소중한 물건이나 상장 등을 버리기 • 먹지 못하거나 혹은 과식 • 수면형태 변화 • 단정치 못한 외모 • 감정과 관련된 신체적 불편함 호소 • 죽음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농담으로도 자살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대응방법

- 경청 - 주의 깊게 듣는다.
- 격려 - 당신의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 심각한 자해의 생각과 느낌이 있을 때 민감성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행동을 취한다.
- 자살하기 전에 보이는 의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충분한 관심을 주어 아이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시킨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 ▶ 교내 상담 서비스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에게 문의하기)
- ▶ Wee센터 (☎ 850-8990~6, <http://www.wee.or.kr>)
- ▶ 생명의 전화 (☎1588-9191, <http://lifeline.or.kr>)
- ▶ 한국청소년 상담원 (☎1388, <http://www.kyci.or.kr>)
- ▶ 시·도지역 정신보건센터 (☎1577-0199, <http://suicide.or.kr>)

7. 청렴한 세상 연수

1 배경

가.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왔으나 학교현장에 여전히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 존재

나.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학교문화 조성

다.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2 촌지 및 불법찬조금 정의

가. 촌지란

사전적으로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이라는 의미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더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며 건네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교육계의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문화임.

나.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임.

3 촌지 및 불법찬조금 유형

가. 촌지 유형

- 1)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2)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나. 불법찬조금 유형

- 1)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2)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3)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4)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4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가. 사전예방활동 강화

1) 투명하고 적법한 예산 운용

- 학교발전기금 및 수익자 부담 경비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적법한 절차 준수
- 집행내역은 반드시 공개(학부모, 교원 등)

2)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홍보 강화

- 촌지수수 관련하여 학기 초, 스승의 날 전, 명절 전에 교직원 연수 및 가정 통신문 발송, 또는 전 학부모 대상 모바일 문자서비스 전송
 - 문자서비스 예시문 : 맑고 투명한 전북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설명회 개최시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연수실시
-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내용 및 신고센터 운영 안내 홈페이지 탑재
-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나.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가. 대상 : 유·초·중·고 학부모

나. 시기 : 5월 중, 11월 중

다. 방법 :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

라. 결과 처리 : 학교통보 및 단위 학교별 전체 학부모에게 통지 의무화

5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 9.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8. 청소년 흡연예방 연수

1. 담배는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청소년 흡연은 성인 흡연 보다 나쁩니다

- 청소년기는 키가 1년에 10cm까지 자랄 정도로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키 뿐 아니라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담배를 일찍 피우면 그 유해성분이 세포 깊숙이 침투하여 해독이 2-3배 이상 큼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세포분열을 방해하여 성장을 방해합니다.

❖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합니다.

- 어린 나이에 흡연을 하면 니코틴에 노출되는 양이 많으므로 그 중독이 심해서 심리적인 의존도가 높습니다.

❖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 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높습니다.

- 15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25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한 사람보다 폐암 사망률이 18.7배나 높습니다.

❖ 청소년 흡연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발달에 해롭습니다.

-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의 산소의 공급을 억제하여 뇌에서의 저산소증을 가져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 담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해독능력이나 저항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합니다.

❖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2.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방법

❖ 담배 연기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식당에서는 금연석을 이용합니다.

❖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킵니다.

❖ 무가당 껌이나 과자를 준비하여 필요 할 때 드립니다.

❖ 흡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엔 집 밖에서 피우도록 부탁드립니다.

❖ 흡연 가족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를 위해 이렇게 해 주세요!!!

1. 가정에서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2. 혹시 흡연을 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금연을 하시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담배와 멀어지도록 합니다.

3. 자녀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간접흡연은 직접 흡연보다 건강에 더욱 유해하니 자녀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습니다.

4. 담배 판매자는 모든 청소년이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신분을 확인한 후 성인에게만 담배를 판매하도록 합니다

◆ 우리 아이들을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간접흡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건강지킴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인터넷중독예방 연수

- 1 단계(R) :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인식(problem recognition)
- 2 단계(E) : 과의존 척도를 활용한 사용 상태점검(status check)
- 3 단계(S) :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Suggest an alternative)
- 4 단계(T) :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형성 강화(connect)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 아동·청소년(6~18세) 보호자용



스마트폰 **실**(R·E·S·T) 하세요!

- R** 1. 스마트폰 과다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대화를 해보세요.
 - 지나친 사용은 신체건강과 관계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사용 자세는 나쁜 습관으로 이어져 건강에 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 E** 2. 자녀가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자녀가 수면시간이 부족해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가족과 다툼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해 과의존 수준을 확인해보세요.
 -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척도 다운로드 : <http://www.iapc.or.kr>
- S** 3.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이해하고, 자녀의 활동에 **관심** 갖도록 노력합니다.
 -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살펴주세요.
 -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 4.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잠들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수면 지도**를 해주세요.
 - 타이머, 알람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잠들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5. 진로와 학업에 **'유용한 앱'**을 함께 이용해보고 지도해주세요.
 - 자녀가 관심을 갖는 분야 또는 학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앱을 찾아보고 함께 이용하여 소통의 도구로 활용해보세요.
- 6.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줍니다.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대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 함께 정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은 가족 모두 숙지하고 지켜도록 노력해주세요.
 - 스마트폰을 끌 때에는 강압이 아닌, 반드시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T** 7.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마련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합니다.
 -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함께 공감하며 재미있게 놀아주세요.
- 8. 산책, 공연관람 등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해주세요.
 -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녀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 9. (보행·이동 시) 이동 할 때는 **'안전하게'** 가방에 꼭 넣도록 지도해주세요.
 - 걸어 다닐 때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습관을 지도해주세요.
- 10. (공공장소 등) 도서관,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기본 매너'**를 지도해주세요.
 - 공공장소에서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하고 통화, 음악 감상, 동영상 시청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인터넷중독예방센터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enter 대표전화 1599-0075 / www.iapc.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문화운동본부



- 1단계(R) :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인식(problem recognition)
- 2단계(E) : 과의존 척도를 활용한 사용 상태점검(state check)
- 3단계(S) :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suggest an alternative)
- 4단계(T) :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형성 강화(connect)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

청소년용(13~18세)



스마트폰 **심**(R·E·S·T) 하세요!

- R** 1. **편한 자세보다 불편해도 '바른 자세'가 좋아요.**

 - 스마트폰 사용 시 손으로 턱을 괴지 말고 허리를 세워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 일정한 시간 사용 후에는 눈 건강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 E** 2. **자신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 수면시간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적이 있는지, 가족과 다툼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척도로 자신이 위험군에 포함되는지 진단해 보세요.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척도 다운로드 : <http://www.iapc.or.kr>
- S** 3. **스마트폰 사용 '종료시간' 알람을 정해 '수면골든 타임'을 지켜주세요.**

 - 건강한 생활을 위해 스마트폰은 종료시간을 정해 수면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4. **스마트폰 '메신저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메신저를 이용하고 불필요 할 때는 알림 끄기 또는 무음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 최근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은 삭제하세요.

5. **진로와 학업에 '유용한 앱'을 이용해보세요.**

 - 스마트폰을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도구로 활용해 보세요.

6. **스마트폰을 '약속된 장소'에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요.**

 - 스마트폰을 보관할 특정 장소를 가족과 정해 보세요.
 - 디지털 기기 및 충전기를 침실(침대)에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 T** 7.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굴 보며(eye-contact) 대화해 보세요.**

 - 식사 중에는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식탁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지 마세요.

8.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정한 '사용 규칙'을 지켜요.**

 - 수업시간에는 스마트폰 전원을 꺼두는 습관을 가져요.
9. **(보행·이동 시) 이동 할 때는 '안전하게' 가방에 꼭 넣어요.**

 - 걸어 다닐 때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서 보관해주세요.

10. **(공공장소 등) 도서관,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기본 매너'는 나부터 실천해요.**

 - 공공장소에서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하고 통화, 음악 감상, 동영상 시청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대표전화 1599-0075 / www.iapc.or.kr



10. 교원능력개발평가 안내

■ 교원 능력 개발 평가란 무엇인가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란 교원들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활동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요?

- 온라인을 통하여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합니다.

(2학기 중 실시 예정)

- 연 1회 실시되는 학부모 공개 수업 참관을 비롯하여 학급 경영,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과 교장·교감 선생님의 학교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누가 답한 것인지 알 수 없게 처리됩니다.

■ 익명성 강화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콜센터 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행정기관망인 NEIS 대국민 서비스의 학부모서비스에 접속하여 참여함으로써 익명성이 보장이 예년보다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응시자의 응시 결과는 설문을 완료하는 순간 누가 어떻게 설문에 응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결과는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콜센터 역할의 역할은 온라인 평가 접속 방법, 평가 방법, 기타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운영을 통해 더욱 쉽게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님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 귀찮은데 대충 표시하면 되지 내가 안해도 누군가 하겠지….
- 우리 애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뭐 학교 사정을 잘 아나?
-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니까 다 만족이지

11. 개학대비 코로나19 대응 연수

1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계획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으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등교 시 발열 체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발열체크 장소 : 본관 1관 1층 현관

2. 발열체크 시간 : 08:20 ~ 09:00까지

3. 발열체크 기준 :

- 37.5℃ 이상의 발열이 보일 경우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
※ 학교장 재량에 따른 ‘등교중지’ 출석 인정-학교보건법 제8조)
- 37.5도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코로나 19 감염증 감염 의심 정황 (가족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거나 최근 코로나 19 발생 지역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감염자와 밀접접촉 경험 등)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 1339에 연락한 후 안내를 따른다.

예방 수칙

- ① **마스크 착용** : 공공장소(학교 포함) 방문 시,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착용
 - ▶ 마스크를 학교에서 배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등교시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KF-80 이상을 추천하나 일반 마스크,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면 마스크도 가능,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착용하나 **37.5℃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할 경우는 등교 중지**합니다.
 - ▶ 학생들이 일과 중 마스크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에 여벌로 준비합니다.
 - ▶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 ② **손 씻기** :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 ③ **체온측정**
 - ▶ 등교 전 건강상태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등교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해주세요.
 - ▶ 등교 시 체온측정 후 **37.5℃ 이상이면 일시적 관찰실(1층 방송실 및 2층 교육기획실)에 대기하다 학부모님과 연락하여 귀가 조치**합니다.
 - ▶ 학교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연락 협조 바랍니다.
- ④ **기침 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 ⑤ **공무 외 외부인 학교 출입을 통제**합니다.
 - ▶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학교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마스크 미착용, 발열 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p>개인 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학생, 교직원, 보호자 보건교육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문자발송, 홈페이지 게시, 교직원 연수 실시 등) ■ 전교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교육(시업식 당일 방송조회) -> 손씻기 지도 철저, 기침예절 교육 -> 마스크 착용 교육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관리방법 교육) ->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강조(법령에 따른 처벌 가능) ■ 발열체크-37.5도 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등교중지 (학교장 재량에 따른 ‘등교중지’ 출석 인정-학교보건법 제8조) ■ 기저질환 및 장애 등 건강 취약 학생 보호 -> 등교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후에 호흡기 증상 호소 시 바로 가정으로 귀가 조치함.
<p>학급 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는 출근 시 스스로 발열 체크 함 ■ 손 소독제 후 교실 입실하도록 지도 ■ 매 쉬는 시간 마다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여 환기 실시(체크리스트 활용) ■ 교실 출입문, 책 걸상, 컴퓨터, 키보드 등 교실 물품 소독 실시 -> 횃수-수시로(출근 시, 퇴근 전 이외 수시 시행) -> 소독 시 개인 보호구 착용(마스크, 일회용 장갑)후 소독제 분무 후 환기 -> 소독 완료 후 비누와 물로 손 씻기 ■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 모니터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 유증상 발생 시(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37.5°C이상 확인 후)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후 병원 진료 위해 귀가 조치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 학부모가 오기 전까지 일시적 관찰실(교사 휴게실) 머무르며 상태를 면밀히 관찰 </div> <p>※ 학교장 재량에 따른 ‘등교중지’ 출석 인정(학교보건법 제8조)</p>
<p>학교 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물품 비축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 실시, 청소 강화 ■ 음용수 제공시설 위생관리 강화

12.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온라인 수업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차질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수업 진행 일정

구분	4.6~4.8.	4.9~4.15.	4.10~4.14.	4.16~4.17.	4.20~
중	3	사전점검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		사전점검	온라인 개학(4.16.~)

□ 과목별 온라인 수업 진행 방법

과목	온라인 수업 방법	과목	온라인 수업 방법
국어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수업	미술	e학습터를 이용한 동영상 수업
수학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수업	한문	e학습터를 이용한 동영상 수업
과학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수업	체육	e학습터를 이용한 동영상 수업
영어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수업	음악	e학습터를 이용한 동영상 수업
사회/역사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수업	도덕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수업
기술가정	카카오톡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수업	※ 수업내용에 따라 수업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학생에게 개별 연락 예정.	

□ 수업 시정표

교시	시간	
1교시	08:50 ~ 09:35	※ 학년별 수업 시간표 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 819번 및 공지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가급적 수업시간 중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연결상태 불량 등 불가피한 경우 해당 교과교사가 전화 등으로 수업내용 및 피드백 안내합니다.
2교시	09:45 ~ 10:30	
3교시	10:40 ~ 11:25	
4교시	11:35 ~ 12:20	
5교시	13:10 ~ 13:55	
6교시	14:05 ~ 14:50	
7교시	15:00 ~ 15:45	